

“청구자와 처리자가 한 권으로 배우는”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



산림청

차례

[정보공개 제도 일반]

- I. 정보공개 필요성-----2
- II. 정보공개 제도 개요-----3

[청구 처리 절차]

- I. 청구건 처리 흐름-----4
- II. 정보공개 청구와 처리 절차-----7

[사전정보공개 운영]

- I. 사전정보공개 개요-----14
- II. 산림청 사전정보공개 운영 현황-----16

[원문정보공개 운영]

- I. 원문정보공개 개요-----25
- II. 산림청 원문정보공개 운영 현황-----27

[공개여부 결정 기준]

- I. 비공개 기준-----28
- II. 처리 요령 및 사례-----30

정보공개 제도 일반

I. 정보공개 의 필요성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협조 획득 가능

◆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공공기관이 생산·취득한 정보는 지식정보 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 크므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하여 공직의 부패를 막고 국민의 불신을 차단하는 기능

◆ ‘국민주권주의’ 의 실현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 국정에 관한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II. 정보공개 제도 개요

◆ 정보공개 의 개념

-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 중인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공개
- 사전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정보를 **사전에 미리 공개**
- 원문정보공개: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원본 그대로 공개**
- ※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8호 정보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가능**(공개가능 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혼합된 경우는 부분공개)

◆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
 - 중앙행정기관
 -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정부산하기관 포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시행령 참고](#))

◆ 정보공개 청구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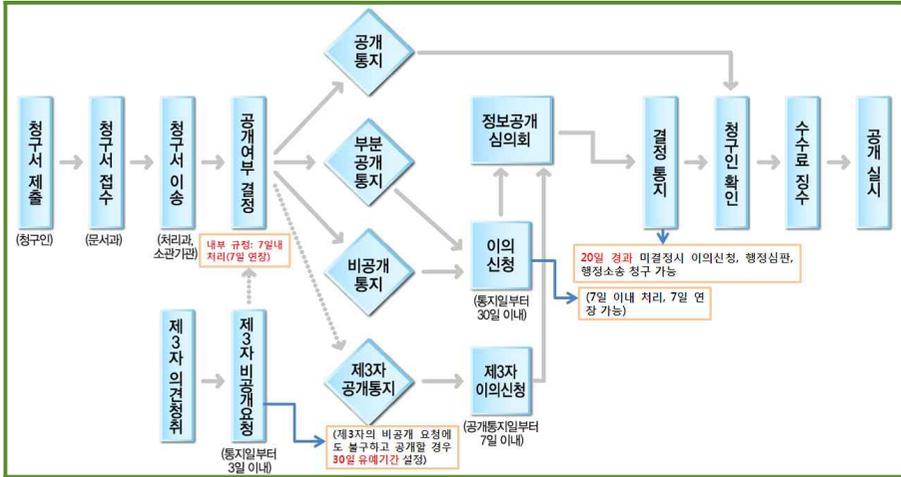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청구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정보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 처리 절차

I. 청구권 처리 흐름



※ 처리자가 통지 이전까지 청구인은 취하가 가능함

■ 청구권의 처리 기한

- 최초 10일(내부 규정-7일)이내 처리, 1회 기간연장 가능(10일 추가)
- 이의신청건은 7일 이내 처리, 1회 기간연장 가능(7일 추가)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제3자 의견청취 및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제3자에 대한 통지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대상 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실익은 없음**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의견 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함
 - *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 또는 부분 공개할 것을 고려하고 있어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함
 - ** 정보가 공개 또는 부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제3자에게 통지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즉시 문서로서 통지
 - ※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됨

◆ 청구 및 처리절차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제출
- 직접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구술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대신 작성하게 할 수 있음.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청구방법 : 직접청구, 우편, 모사전송, 구술, 정보통신망
- 공개신청은 주관부서에 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서’의 내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담당부서(처리과)로 이송
 -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청구한 경우여 별도의 ‘정보공개처리대장’ 등의 작성없이 모든 과정이 관리되도록 부서 담당자 등이 시스템에 등록
 - 청구된 내용이 타부처 또는 지자체 소관 사항일 경우 “기관이송” 버튼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고 사유를 기재
 - 요청한 정보의 내용이 민원성의 청구건인 경우 “민원이첩” 버튼을 이용하여 이첩하면 해당 청구건이 국민신문고로 이첩됨
 - 동일한 청구건을 2회 이상 반복 청구하는 경우 “종결처리” 가능함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함
- 제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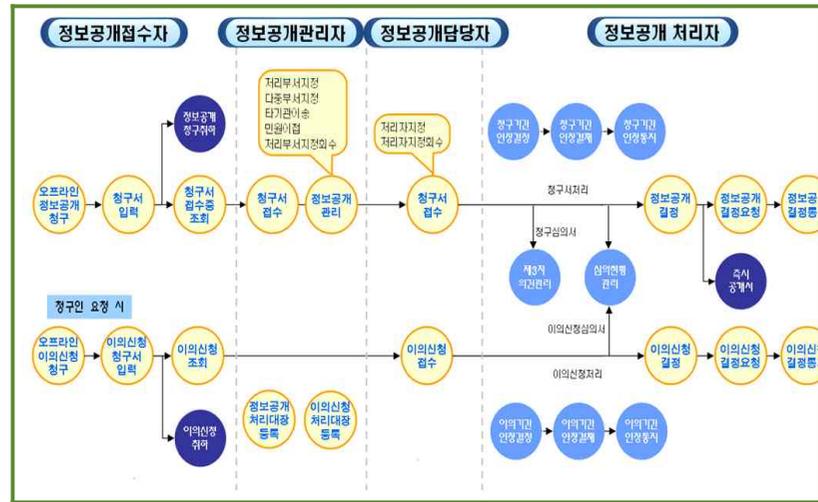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미개최 요건: 심의회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반복적인 신청, 법령에 비밀로 규정된 정보
- *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인용(공개), 기각(비공개, 부분공개 결정), 각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 중 결정

○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가능(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함)
-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제기
 - ☞ 정보공개와 관련이란: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처리절차 등

II. 정보공개 청구와 처리 절차

■ 단계별 처리과정



■ 일반인 이용 청구 사이트: 정보공개시스템 대국민청구(<https://www.open.go.kr>)



■ 일반인 이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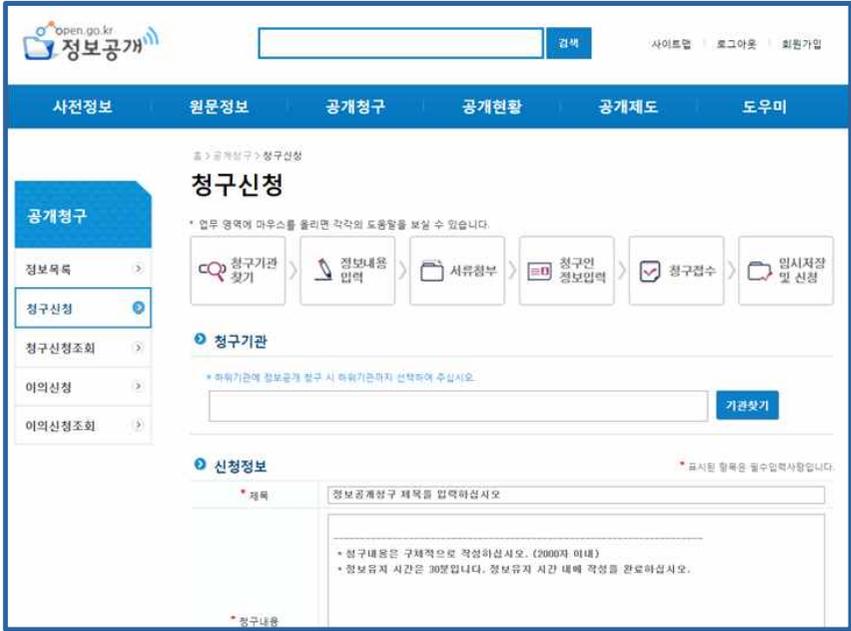


☞ 정보목록 검색 후 해당 문서 선택하여 청구



- 1단계: 청구신청

☞ 기관을 선택하고 원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한 후 기본 정보 입력 →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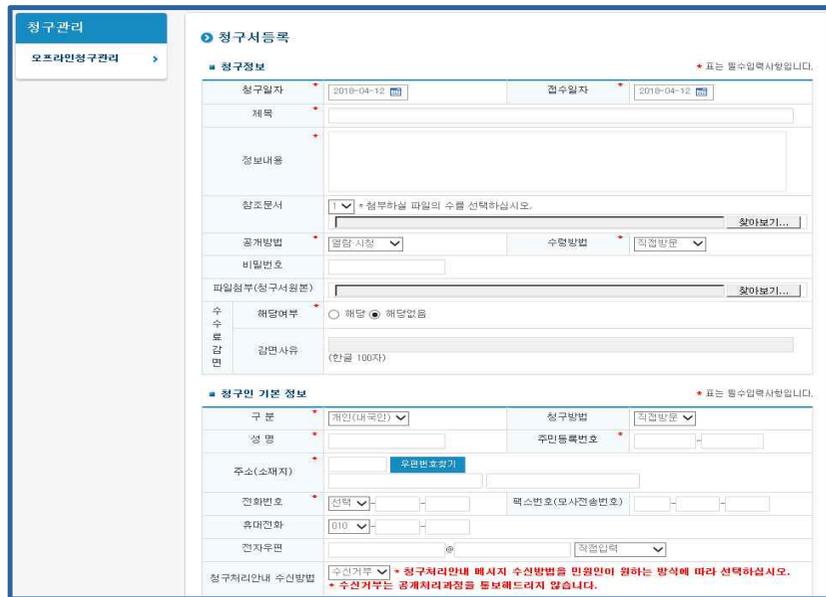
- '바로청구'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해당 문서를 생산한 기관으로 접수됨

■ **청구권 처리: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청구 이용**(<http://admin.open.go.kr>)



- 1단계: 청구권 등록 → 접수

- ① 온라인 접수인 경우 관리자가 접수
- ②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청구권은 접수자가 등록(청구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원본은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고 청구인의 정보와 청구내용 입력



- 2단계 : 청구권 처리부서 지정(기관 담당자) → 처리자 지정(부서 담당자)

- ① 처리부서지정(기관 담당자가 수행) → 두 개 처리과가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다중부서”지정 **다중부서가 지정된 경우**는 지원부서에서 먼저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주관부서에서 결재 후 통지
- ② 처리자 지정 (각 부서 담당자가 수행)

- 3단계 : 정보공개 여부 결정(처리자가 결정)



■ 청구정보

접수번호	4650601	접수일자	
처리상태	부처처리자지정	청구일자	
제목	부처 산하의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 요청		
정보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처에서 보유하고 계신 다음의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부탁드립니다. * 자료: 부처 산하의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보고서 (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 내용: 평가단 선정방법, 평가단 구성 및 운영, 평가대상기관, 평가기간, 평가결과 등을 포함 * 대상기간: 2014년~2017년 감사합니다.		
참조문서	[첨부파일없음]		
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
파일첨부(청구서원본)	[첨부파일없음]		
수수료감면	해당여부	해당없음	
	감면사유	[첨부파일없음]	

■ 청구인 기본 정보

- ① 처리자는 **결정**(공개/부분공개/비공개중 결정시), **정보부존재/질의·진정**(청구정보가 없는 경우, 민원성 청구권 처리시), **즉시공개**(결재가 필요없는 경미한 사안이나 이미 공표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중 선택하여 작성

②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단의 “기간연장” 버튼을 이용하여 사유를 기개→ 결재 → 통지

※ 1회 기간연장 가능하며 10일 추가

- 4단계: 결정서 작성 → 결재 → 통지(청구인에 안내)

① 공개: ‘공개내용’ 활성화, 부분공개: ‘공개내용’, ‘비공개내용 및 사유’ 2개 창 활성화, 비공개: ‘비공개내용 및 사유’만 활성화

② 비공개시 8개 사유 중 선택하고 서식에 맞게 자세하게 작성

③ 공개방법은 청구인이 지정한대로 공개

④ 공개나 부분공개시 해당 정보 첨부

⑤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표준수수료계산” 창에서 수량을 기입하면 자동 계산

⑥ 결정통지서 저장 → 결재(내부결재) → 통지

※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 후에 정보 첨부 가능

- 기타 처리: 결정통지서 작성 전에 등록

① 제3자 통보사실 및 의견 등록

②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과 등록

③ 2회 이상 동일 내용 반복 청구시 종결

▪ 수수료 관련 규정(시행규칙 별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켤(60분 기준)마다 3,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편이 1켤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p>< 비교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 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 감면 가능(소명자료 제출, 확인 후 처리)

-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 등이 학술, 연구목적,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전정보공개 운영

I. 사전정보공개 개요

◆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 ①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보
- ②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정보
- ③ 예산집행 등 행정감시 정보
- ④ 기관장이 정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①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 ②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 ③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④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 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 ⑥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 정보공개 대상 기관의 의무

- 정보공개 대상기관 조례 지정 (영 제2조)
- 청구권리 존중, 정보관리체계 정비 등 (법 제6조)
 - * 정보공개 업무 주관부서 및 적정 담당인력 배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정보의 적절한 보존, 신속한 검색체계 유지,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구성 등

- 사전행정정보 공표 (법 제7조, 영 제4조)
- 문서목록 작성·비치 및 공개, 정보공개장소 확보 (법 제8조, 영 제5조)
 - * 정보공개 처리절차, 서식, 수수료 등 편람 작성·비치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 (법 제9조)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영 제11조의2)
-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록유지 (영 제16조)

공개 패러다임의 전환

-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선별·소극적으로 제공하는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패러다임으로 전환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선제적·능동적 정보공개**
 -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 제고
- **공개 범위의 확대로 투명성 및 알 권리 증진**
 - 대상 기관 및 대상 정보를 대폭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증진

II. 산림청 사전정보공개 운영 현황

◆ 홈페이지 메뉴 운영

- 산림청 홈페이지 > 산림행정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정보명	공개내용,범위	주기	시기	공표방법	담당부서 /연락처
기관 주요 업무계획	목표, 추진현황, 추진계획 등	연1회	1월	홈페이지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4054
산림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수시	계획수립/변경시	홈페이지	산림정책과/042-481-4134
기관장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목적, 대상수, 금액, 사용방법 등	월1회	매월말	홈페이지	운영지원과/042-481-4014

■ 업무별 정보 목록 현황

업무 분야	정보명	담당부서
	기관 주요 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실
	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실
	주간업무계획 및 실적	기획재정담당관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운영지원과
	소속·산하기관 결산	운영지원과
	수의계약	운영지원과
	정보목록현황	운영지원과
	기관해외출장보고서	국제협력담당관실
	기관국정감사결과(계획 및 결과 포함)	기획재정담당관실
	위원회 구성 현황	혁신행정담당관실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혁신행정담당관실
감사운영계획	법무감사담당관실
자체감사 결과	법무감사담당관실
민원서식 자료	법무감사담당관실
비영리 법인 현황	법무감사담당관실
민원행정 추진시책	법무감사담당관실
민원편람	법무감사담당관실

업무 분야	정보명	담당부서
	몽골그린벨트 조림 사업	국제협력담당관실
	민간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국제협력담당관실
	창원이니셔티브 건조지녹화파트너십(GDP)사업	국제협력담당관실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 추진 현황	국제협력담당관실
	중앙아시아 산림협력 사업	국제협력담당관실
	산림경관복원 메커니즘(FLRM) 추진 현황	국제협력담당관실
	산림종자관리 정보	산림자원과
	조림사업 정보	산림자원과
	산림생명자원관리	산림자원과
	나무심기계획	산림자원과
	산림생명자원 분양 현황	산림자원과
	양묘장 관리 정보	산림자원과
	조림사업 비용	산림자원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산림자원과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산림자원과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목재산업과
	목재펠릿 정보	목재산업과
	임도시설유지관리	목재산업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목재산업과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	목재산업과
	목재수급 정보	목재산업과
	국유임산물 매각(목재)현황	목재산업과
	임업기능인·영림단 관리	목재산업과
	목재생산업 등록 교육안내	목재산업과
	목재문화 활성화 정보	목재산업과
	희귀특산산물 보전 관리	산림환경보호과
	수목유전자원관리	산림환경보호과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관리	산림환경보호과
	산림보호구역관리	산림환경보호과
	국가표준식물목록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지식정보	국립수목원
종자공급원 관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등록 현황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품종 출원 현황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특성조사요령 발행 현황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수입요건 승인 현황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명자원 보존(보존목록 등재) 현황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민·관·원 종자 품질검사 현황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조림지 활착 상황	각 지방청
채종림, 수형목, 채종임분 지정 현황	각 지방청
임도 신설·유지·보수	각 지방청
임산물생산·매각 현황	각 지방청
멜감 나누어주기 계획 및 결과	각 지방청
요목생산량 관리	각 지방청
목제품 품질단속	각 지방청
조림사업 현황	각 지방청
목재수급현황	각 지방청
펠릿 보일러 보급	각 지방청
임업기술개발사업 기획과제	산림정책과
임업기술개발사업 자유과제	산림정책과
산림경영인증현황	산림정책과
입목생산 실적	각 지방청
종자채취 현황	각 지방청

업무 분야	정보명	담당부서
	산림박람회 정보	산림휴양등산과
	도시숲정책사업	도시숲경관과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사업 실적	도시숲경관과
	도시숲경관 사업계획	도시숲경관과
	도시숲·산림공원 지정현황	도시숲경관과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 대전	도시숲경관과
	시민이 만드는 숲 사례	도시숲경관과
	함께하는 사람들	도시숲경관과
	녹색도시우수사례	도시숲경관과
	산림생태마을 정보	산림복지정책과
	자연휴양림 지정(변경지정) 정보	산림휴양등산과
	수목장림 정보	산림복지정책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현황	산림교육치유과

산림복지정책 정보	산림복지정책과
휴양림 활성화	산림휴양등산과
치유의 숲 조성	산림교육치유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현황	산림교육치유과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정보	산림교육치유과
산림문화자산 지정·관리	산림휴양등산과
국민의숲	산림휴양등산과
산림교육센터 정보	산림교육치유과
인증 프로그램 현황	산림교육치유과
숲태교프로그램	산림교육치유과
숲사람소년단 정보	산림교육치유과
숲길조성·관리 정보	산림휴양등산과
등산로 조성 정보	산림휴양등산과
세계의 명산	산림휴양등산과
북한의 명산	산림휴양등산과
숨겨진 우리산	산림휴양등산과
100대명산 동영상	산림휴양등산과
100대명산 및 등산로 정보공개	산림휴양등산과
백두대간수목원 조성 사업 정보	수목원조성사업단 시설과
전국수목원 운영 현황	산림환경보호과
지역생태숲 조성현황	산림환경보호과
산림박물관 운영 현황	산림환경보호과
자생식물원 조성현황	산림환경보호과
산림생태복원분야 사업계획	백두대간보전팀
산림복원 기본계획	백두대간보전팀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1차기~)	백두대간보전팀
정맥 자원실태조사(1차기~)	백두대간보전팀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백두대간보전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현황	백두대간보전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백두대간보전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침	백두대간보전팀
수목원 보유 식물 현황	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 예약·입장객 안내	국립수목원
산림동물원 보유 동물 현황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소장품 현황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표본현황	국립수목원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정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민의 숲 지정 운영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 경영수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 가동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테마프로그램 산림문화행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비데아프로그램 산림문화행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회적 약자 산림문화행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상징·국민의 숲 지정 현황	각 지방청
등산로 정비사업 정보	각 지방청
원대리 자작나무 명품숲	북부지방산림청
DMZ편치물둘레길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교육관 운영계획	동부지방산림청
행사계획	각 지방청
솔밭길데이트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교육및문화행사	각 지방청
산림공원 현황	각 지방청
금강소나무숲길 정보	남부지방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 현황	수목원조성사업단 기획과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 추진단 운영현황	수목원조성사업단 기획과
씨드볼트 종자 증복보존 현황	수목원조성사업단 시설과
세종수목원 조성사업 현황	수목원조성사업단 시설과
백두대간수목원시설안내	수목원조성사업단 시설과
백두대간수목원예약현황	수목원조성사업단 시설과
백두대간수목원 채용정보공고	수목원조성사업단 시설과

업무 분야	정보명	담당부서
	해외산림자원개발 정보	해외자원담당관실
	해외인턴사업 정보	해외자원담당관실
	임산물 남북 교역	임업통상팀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 지원 정보	임업통상팀
	일자리 대책 및 관련정보	산림정책과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산림정책과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	산림정책과
	숲가꾸기사업정보	산림자원과
	면세유류 공급 실적	목재산업과
	임산물가격 조사	목재산업과
	산림기술자 자격증 관련 정보	목재산업과
	임업기계 관련 정보	목재산업과

산림사업법인 현황	목재산업과
산림복합경영사업 추진 정보	사유림경영소득과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및 관리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산물지리적표시등록	사유림경영소득과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사유림경영소득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사유림경영소득과
산림소득증대사업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산물유통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업인재해복구	사유림경영소득과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관련 소득사업지원시설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산물가공유통관련 소득사업지원시설	사유림경영소득과
전통산지약용식물관련 소득사업지원시설	사유림경영소득과
산림재해복구관련 소득사업지원시설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산물직거래유통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산물직매장정보	사유림경영소득과
산림소득지원사업	사유림경영소득과
산림토목 시범단지	각 지방청
일자리사업 관련 계획 및 결과	각 지방청
특정임산물 양어 실적	각 지방청
임업기계장비 현황	각 지방청
특용자원 기술이전	국립산림과학원
특용자원신품종보호출원및등록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산권 등록자료집	국립산림과학원
지역산림개발계획	각 지방청
숲가꾸기 패트를 운영 관리	각 지방청
산림경영대행사업	각 지방청

업무 분야	정보명	담당부서
	내산위치 찾기	정보통계담당관실
	GIS현황지도	정보통계담당관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정보	산지정책과
	보전산지 지정, 변경, 해제 정보	산지정책과
	산지복구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정보	산지정책과
	국유재산 증감현황 및 현재액	국유림경영과
	국유재산 취득·처분 현황	국유림경영과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 현황	국유림경영과
	국유재산 종류구분 및 용도폐지 현황	국유림경영과
	국유림대부·사용허가 현황	국유림경영과

공동산림사업 운영 정보	국유림경영과
국유재산관리계획	국유림경영과
조림대부지·분수림내 입목매수 현황	국유림경영과
사유림매수사업 실적	국유림경영과
국유재산관리	각 지방청
사유림 매수 계획	각 지방청
사유림 매수 결과	각 지방청
지방청 산지전용현황	각 지방청
사유입목 매수	각 지방청

업무 분야	정보명	담당부서
	산림피해방지대책	산림환경보호과
	산림피해 현황	산림환경보호과
	등산로 및 입산통제 구역 관리	산불방지과
	산불방지대책	산불방지과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방지과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방지과
	산사태위험지 지정현황	산사태방지과
	전국산사태예방 대책	산사태방지과
	자연재난(산림분야)복구비용	산사태방지과
	사방지 지정·해제 현황	산사태방지과
	산사태 복구현황	산사태방지과
	산사태예방지원본부 결과보고	산사태방지과
	병해충 예방 방제계획	산림병해충방제과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 현황	산림병해충방제과
	병해충 발생 및 방제 실적	산림병해충방제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산림병해충방제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	산림병해충방제과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지정 현황	산림병해충방제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현황	산림병해충방제과
	재선충병 포상금 지급 기준	산림병해충방제과
	나무의사제도	산림병해충방제과
	산림항공기 관리정보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 내역	산림항공본부
	산불예측정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각 지방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각 지방청
	사방댐 설치 현황	각 지방청
	지방청별 산림피해 현황	각 지방청

수해복구 사업 정보	각 지방청
산불위험지역정보	산불방지과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만들기	남부지방산림청
계류보전 사업 현황	각 지방청
소나무재선충 의심목 시료 검사	각 지방청
산림항공본부 자체 신규채용	산림항공본부
제주격납고 신축공사 현황	산림항공본부
항공방제 정보	산림항공본부
비행권역 현황	산림항공본부
항공기안전관리 정보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본부 산물진화용 밤비버킷 현황	산림항공본부
산물통계	산불방지과
사방사업 기본계획	산사태방지과

업무 분야	정보명	담당부서
	임업통계연보	정보통계담당관실
	산림기본통계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산물생산조사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산물생산비조사	정보통계담당관실
	임가경제조사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업경영실태 조사	정보통계담당관실
	전국산주현황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산물수출입 정보	임업통상팀
	연구사업계획 및 실적	국립수목원
	산림교육 과정	산림교육원
	연구과제 관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과제 평가결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원발간자료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용역	각 부서
	수간재적표 및 임분수확표	국립산림과학원

업무 분야	정보명	담당부서
	산림청 시청각 자료	대변인실
	산림청 페이스북	대변인실
	산림청 트위터	대변인실
	산림청 블로그	대변인실
	산림정책 발표 브리핑영상	대변인실
	정책홍보 추진계획	대변인실
	부정이슈 및 대응보도	대변인실

장기국외훈련 결과	운영지원과
채용정보	운영지원과
인사 정보	운영지원과
공용차량운영현황	운영지원과
친환경물품구매계획 및 결과	운영지원과
산림청 후원명칭 승인 현황	운영지원과
기록물 공개재분류 목록	운영지원과
산림청 원문공개현황	운영지원과
소속기관장, 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각 국, 각 지방청
수의계약 정보(현황)	소속기관별
상품권 구매 및 사용현황	운영지원과
예산현황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집행실적	기획재정담당관실
국고보조금 예산	기획재정담당관실
재정사업평가 결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산림청-타기관 MOU 체결 현황	창조행정담당관실
산림정책 자문위원회 정보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요정책 국민인지도	창조행정담당관실
조직정보	창조행정담당관실
행정제도 개선	창조행정담당관실
산림청 연구모임현황	창조행정담당관실
산림청 국민제안 운영현황	창조행정담당관실
부패방지대책	법무감사담당관실
법령 유권 해석 및 질의회신	법무감사담당관실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감사담당관실
비영리민간단체	법무감사담당관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법무감사담당관실
규제정비계획	법무감사담당관실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	각 지방청
규제개혁 추진실적	각 지방청
무인카메라 관리	각 지방청
주간업무계획 및 실적	기획재정담당관실
달라지는 주요산림정책	기획재정담당관실
법령정보	법무감사담당관실
입법예고	법무감사담당관실
행정예고	법무감사담당관실
국가간 임업협력 정보	해외자원담당관실
국제부담금(의무및사업부담금)정보	국제협력담당관
세계산림총회(WFC) 추진 현황	국제협력담당관

원문정보공개 운영

I. 원문정보공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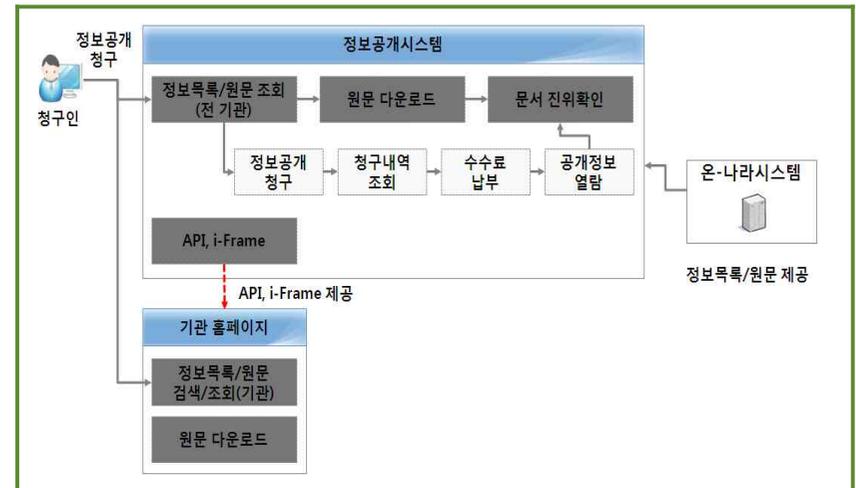
■ 목적

-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문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 대상

- 각급 기관에서 생산하는 문서 중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공개 문서

■ 원문공개 서비스 이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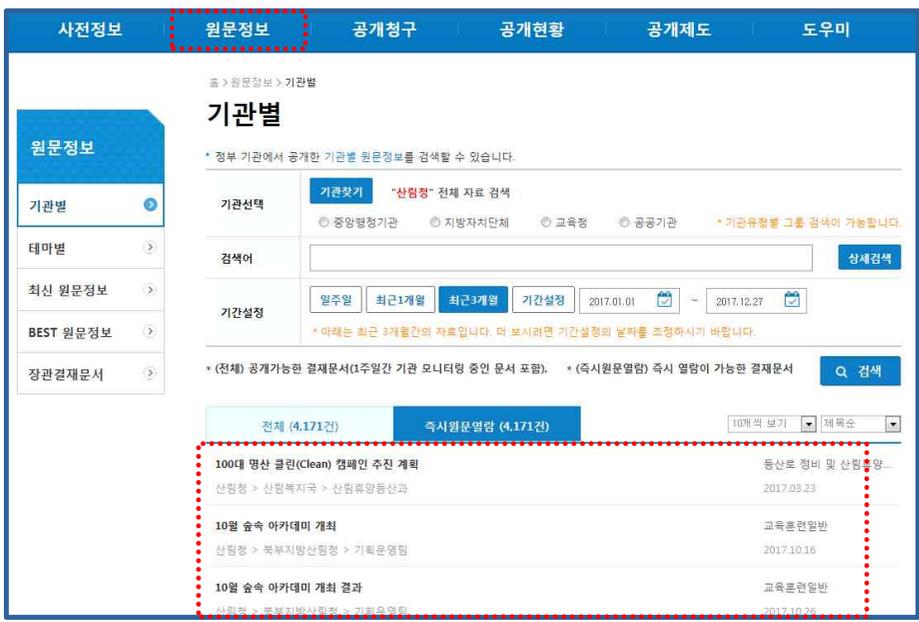
① 공문 작성시 '대국민 공개'로 지정한 문서는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스템에 공개

- 각 기관의 문서생산 시스템과 일반국민이 이용하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연계. 일반국민이 기관의 생산문서를 조회
- 생산문서 목록을 검색하면 모든 문서 정보 확인 가능

② 생산한 문서 중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대국민 공개' 설정 문서는 원문 다운로드 가능

- 국민에게 제공되는 원문은 제공되는 원본 파일(hwp, word, excel, ppt 등)에 진위확인스탬프를 발급하여 제공

■ 원문공개 서비스 검색·활용



기관별

* 정부 기관에서 공개한 기관별 원문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선택: "산림청" 전체 자료 검색

검색어: [검색어 입력]

기간설정: [기간설정]

전체 (4,171건) | **즉시열람열람 (4,171건)**

100대 명산 클린(Clean) 캠페인 추진 계획
 산림청 > 산림복지국 > 산림휴양등산과
 2017.03.23

10월 숲속 아카데미 개최
 산림청 > 북부지방산림청 > 기획운영팀
 2017.10.16

10월 숲속 아카데미 개최 결과
 산림청 > 북부지방산림청 > 기획운영팀
 2017.10.27

원문정보 상세

제목	100대 명산 클린(Clean) 캠페인 추진 계획		
기관명	산림청	담당부서명	산림휴양등산과
담당자명	윤효진	생산일자	2017.03.23
문서번호	1400715-682	보존기간	5년
단위업무	등산로 정비 및 산림휴양 문화	공개여부	공개
분류체계	농림 > 임업·산촌 > 산림휴양·경관조성 > 산림휴양정책 > 산림휴양정책 개발 및 보급 > 등산로 정비 및 산림휴양 문화		
본문파일	100대 명산 클린(Clean) 캠페인 추진 계획.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100대 명산 클린 캠페인 추진계획.hwp		 다운로드  다운로드

- 정보공개포털 > 원문공개 메뉴에서 검색, 다운로드

II. 산림청 원문정보공개 현황

■ 연도별 원문공개 현황

- 연도별 공개율

연도	2015	2016	2017
생산건수(건)	7,915	7,608	7,859
공개건수(건)	5,648	5,301	5,617
공개율(%)	71.4	69.7	71.5

- 연도별 즉시열람 가능 수량

연도	2014	2015	2016	2017	계
수량(건)	3,764	4,827	4,112	4,225	16,928

■ 대상 결재자 정보

구 분	대 상
산림청 본청	청·차장, 각 국장(5)
산림교육원	원장
산림항공본부	본부장
북부지방산림청	청장
동부지방산림청	청장
남부지방산림청	청장
국립수목원	원장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부장(4)

공개 여부 결정 기준

I. 비공개 기준

- 모든 문서는 공개! 단, 다음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구분	비공개 대상 정보
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국가정보원법 제6조) ▶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제4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법 제4조)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지연습, 직장에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총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3호	▶ 범죄·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개인 납세실적,

	<p>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위생감시 등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 우범자 단속계획 등과 같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정보, 위험물 저장장치, 보유종인 독극물 정보
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등에 관한 정보 ▶ 무기·화약·독극물 등의 제조, 운반, 처리에 관한 정보 ▶ 수사 등의 지휘·방법·사실·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처분결과 조치사항, 입찰예정자 경영·평가 내용, 직원의 근무성적 등 공개되는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 -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의견교환이 곤란한 경우 (협의, 의사록) -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 가능한 정보 (초안, 검토서) -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기획안, 검토안)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카드번호,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p>[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기술,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p>[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부동산개발 계획 및 개발정보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등

II. 처리 요령 및 사례

각종 공문 작성 요령(오프라인 청구건 또는 공문 요청 건)

① 제3자 의견 요청서

제목 : 정보공개 관련 제3자 의견 요청

1. 산림청으로 붙임과 같이 귀하(기관)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2.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귀하(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붙임의 '제3자 의견서'에 귀하(기관)의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3자 의견서 1부. 끝.

☞ 청구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있는 제3자는 개인과 기관을 모두 포함하며, 비공개 대상인 경우 별도의 의견 청취는 생략 가능

② 기관이송 안내문

제목 : 정보공개 청구 기관이송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야생동·식물 관리정보(청구정보내용)는 환경부(소관기관명)의 소관 업무로 우리 청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청구서를 소관기관인 환경부(소관기관명)으로 이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성명 :
 - 연락처 :

☞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건에 대한 기관 이송시 공문을 작성하여 회신하며, 온라인 접수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시스템의 “타기관이송” 버튼을 이용하여 소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송하고 위와 같이 사유를 기재

※ 기관내 타 부서(소속기관) 소관업무가 배정된 경우 “반려”로 처리하여 기관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소관 기관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정보부존재”로 처리(부존재사유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체크)

③ 정보부존재 처리 안내문

제목 : 정보부존재통지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관련입니다.
2. 귀하가 청구하신 정보는 우리 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부존재함을 통지합니다.

가. 사유:(아래 사유중 선택하고 자세한 사유를 작성)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언제 폐기되었는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선택하고 해당 정보의 보존기간, 폐기 년도 등을 기재)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나.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성명 :
- 연락처 :

붙임 정보부존재통지서 1부. 끝.

☞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건은 위 공문을 작성하여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작성한 정보부존재통지서를 출력하여 발송. 온라인 접수건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작성·통지로 완료

④ 기간연장 결정 안내

제목 : 정보공개 청구 기간연장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관련입니다.
2. 귀하가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간연장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가. 사유:(아래 사유중 선택하고 자세한 사유를 작성)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 정보생산 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내 부분공개 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성명 :
- 연락처 :

◆ 결정통지서 작성 요령(온라인 · 오프라인 결정통지서 작성)

① 공개(즉시공개)결정 통지

- 전부 공개할 경우 이용하여 “공개내용” 부분만 활성화 됨
- 즉시공개는 온라인 청구인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의 “즉시공개”로 작성하고 별도의 결재과정이 필요없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예시)

접수일자	2018. 00. 00.	접수번호	1400000
청구정보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 내용		
공개내용	우리 청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자료: 00공모사업 결산 자료 (수수료 내역 등 설명)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예시)

접수일자	2018. 00. 00.	접수번호	1400001
청구정보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 내용		
공개내용	○ 공개자료: 2017년 예산집행 내역 다만, 상기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공개된 자료로서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출력할 수 있으므로 정보소재 안내로 대신합니다. - 정보소재: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정책 >예산(접근경로 URL, 열람 방법등 상세히 설명)		

☞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전공개정보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홈페이지내 위치를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 부분공개 결정통지

- 공개대상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부분공개할 경우 이용하여 기재란이 “공개내용”과 “비공개 내용 및 사유”로 나누어져 있음

- 공개내용에는 공개하는 자료명을 기재하고 수수료 등에 대해 설명
- 비공개 내용 및 사유에는 법률의 호수까지 기재하고 사유는 자세히 설명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예시)

접수일자	2018. 00. 00.	접수번호	1400002
청구정보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 내용		
공개내용	공개대상: 정보(문서)명 (수수료 등 관련 사항 설명)		
비공개 내용 및 사유	1.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각호 선택 기재) 2. 사유: 상기 문서중 (비공개 정보 내용)은 공개될 경우 (구체적 사유)의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00호에 의해 비공개 하며 이에 해당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비공개 결정통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예시)

접수일자	2018. 00. 00.	접수번호	1400003
청구정보내용	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비공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법률의 각 호까지 기재) 3. 사유: 청구인이 요청한 상기 정보는 공개 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사항 등을 자세하게 기재)		

공개/비공개 처리 사례

① 산림청 사례

공개요청자료	결정내용	사 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현황 및 계획	공개	-
경기도 화성시 00번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공개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과정 녹음자료	비공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중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사결정과 관련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의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선물관리대장	공개	-
주산단지 지정신청서 및 주산단지 운영평가서	정보부존재결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주산단지 지정 등)에 따라 주산단지 지정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및 운영 평가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이며, 지정 및 운영평가서 제출요구 및 기록물 보유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이므로 우리 청 생산·보유 정보가 아님
정보공개 처리현황	공개	공개여부의 결정에 기간이 소요되지 않으며 이미 대국민공개로 결재한 공문이 존재하므로 별도의 결재없이도 공개 가능하므로 즉시 공개로 처리함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보전·복원을 위한 자문회의 자료	공개	-
기관 대상 역사 및 안보 강연 현황	공개	-
자연휴양림 운영실적,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캠핑장 운영현황 및 매출현황, 향후 추가 건립계획	공개	-
충남지역 재난관리담당자 개인연락처	비공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 직위는 비공개 대상의 예외조항인 신분 정보의 개인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는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이므로 비공개

② 타부처 사례

공개요청자료	결정내용	사 유
방법용 CCTV 위치자료	비공개	공개할 경우 국민의 신체·재산보호를 위협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ODA 중점협력대상국 명단, 선정기준, 선정 이유	부분공개	ODA 중점협력대상국 명단 공개만으로 선정 제외 국가들과의 마찰이나 관계소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개하고 ODA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기 위한 기본원칙, 세부기준, 선정결과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장애인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실적	공개	-
구내식당 식재료 원산지 자료	공개	-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공개	-
홍보대사 현황 활동내역	공개	-
먹는샘물 수입신고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내역	공개	-
특정기업의 성능인증서 적합성 심사평가자료	비공개	특정기업의 기술 노하우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의 이익을 침해하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내역	공개	-

③ 행정소송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공개요청자료	결정내용	사 유	비고
중중 등록 당시 각 부등산에 관한 재산세 등 과세정보 자료 일체	비공개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과세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가 타당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한 타당성 판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광업소 도급업체의 2012년 용역 및 도급설계내역서	공개	청구된 정보는 작업량, 투입 인원수, 소요 작업비,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세부내역과 기업이윤을 고려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한 자료로 공개된다해도 기업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기업·법인 등의 비공개 정보 범위에 대한 내용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문의 번역오류 문제가 제기되어 번역 정오표를 공개하라고 청구	공개	한미 FTA 번역 오류 정오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한 내용
징벌위원회 회의록	부분공개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징벌절차를 진행한 내용과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비공개로 심사, 의결한 내용이 확연히 구분되므로 비공개 대상 부분을 분리하거나 복사하여 그 사본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함. 비공개 심사, 의결한 내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한 내용
청구인이 고발한 피의 자들에 대한 의견서	공개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이 아니고 의견서 등에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상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범죄사실, 적용법조, 증거관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은 비록 수사기록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등에 해당하는 수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기는 하나 청구인이 관련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경찰의 송치의견서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그 정보의 내용, 수집정보 등이 노출되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인권 및 공익목적에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개인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가 타당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해석에 대한 판례, 개인의 권리구제와 직무수행의 지장간의 비교형량에 대한 문제.
(소송중인)사업의 실시 계획인가 및 그와 관련된 농지전용협의와 산지전용협의 서류	공개	소송중인 사항도 재판의 쟁점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재판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그와 관련된 농지전용협의와 산지전용협의는 그 자체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한 확대해석에 대한 판례, 대상 정보가 재판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지에 대한 문제
자신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및 감사결과와 관련된 내부 품의서 또는 의견서	비공개	직원에 대한 감찰은 민원과 감사의 성격은 동시에 지녀 감사의 속성상 조사결과에 이르기까지 조사내용이나 의 사결정과정 등이 공개된다면 감사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자신들의 진술내용의 공개부담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롭게 진술하기 어렵고 조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감사 종료 후에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음	
전국 모든 토석채취업체에 대해 최초 토석 채취허가일, 토석채취 면적, 토석채취량, 해당 사업장 지번 등을 청구한 건에 대해 정보부존재로 처리(정보의 소재지가 각 지자체	기각	정보공개청구서를 각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고 정보부존재로 처리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건으로, 청구인은 정보의 보유 기관이 각 지자체인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피청구인인 산림청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보부존재 처리는 위법·부당하지 않음	청구인이 정보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는 취지의 재결례(처리절차에

체이므로 정보부존재로 처리함)			대한 행정심판)
이미 공개한 정보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고 공개위치를 안내(URL)로 공개결정을 같은 판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건	기각	이미 공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소재안내로 같은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건으로 이미 공개 결정된 사항이라 이의신청 대상 요건에 부적합하여 각하한 것으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려면 취득 가능하므로 처분은 정당함	처리절차, 공개형태의 흥결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
정보부존재 통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건	기각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대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을 상당한 개인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정보의 존재여부의 개인성 입증책임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
본인의 자동차등록원부 내용	각하	본인의 자동차등록원부신청을 정보공개청구한 건으로 민원으로 보아야 하면 기관이 자동차등록원부는 해당 규칙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은 민원회신에 해당하며 이것을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각하함	청구 내용에 따른 처리의 적절성 여부 판단

※ 이 사례는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개별 사안에 대한 비공개 여부의 판단은 ‘**법익의 비교형량**’에 따라 다를 수 있음